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수헌	950809-*****		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의뱀	보수월액(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	
01월	0	0	0	0	
02월	0	0	0	0	
03월	0	0	0	0	
04월	0	0	0	0	
05월	0	0	0	0	
06월	0	0	0	0	
07월	0	0	0	0	
08월	0	0	0	0	
09월	6,080	480	0	0	
10월	0	0	0	0	
11월	0	0	0	0	
12월	0	0	0	0	
연말정산	0	0			
합계	6,080	480	0	0	
총합계				6,560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수헌	950809-*****	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0
06월	0	0
07월	0	0
08월	14,400	0
09월	0	0
10월	0	0
11월	0	0
12월	112,18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접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리	0	
합계	126,580	0
	126,580	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수헌	950809-*****	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7-82-02*	인구****	일반	9,000
3-49-00*	로덴****	일반	15,7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4,7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4,7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수헌	950809-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0	0	114,600	0	114,600
3월분	0	0	3,200	0	3,200
4~7월분	0	0	56,450	0	56,450
그외 (1~2월,8~12월분)	0	0	54,950	0	54,95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· · - · - /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0	0	
신용카드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일반	0	0	0	0	0
			0	0	0	0	
			2,450	2,600	3,200	1,200	
신용카드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대중교통	15,500	10,300	29,450	20,800	114,600
			2,900	16,000	10,200	0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수헌	950809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1,892,552	17,000	0	7,100	11,916,652
3월분	1,318,588	10,000	0	0	1,328,588
4~7월분	3,401,003	3,000	0	0	3,404,003
그외 (1~2월,8~12월분)	7,172,961	4,000	0	7,100	7,184,061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(1212)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0	10,100	
직불카드 등	직불카드 등 <u>농업협동조합중앙회</u> 일 ¹	일반	7,500	0	0	0	22,650
			0	4,050	0	1,000	
			1,154,370	1,266,100	1,318,588	1,374,358	
직불카드 등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일반	830,686	572,450	605,909	1,057,284	11,869,902
			1,041,390	905,830	766,616	976,321	
		0	0	10,000	3,000		
직불카드 등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전통시장	0	0	0	4,000	17,000
			0	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10119-6953312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5-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수헌	950809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
	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직불카드 등 <u>농협은행</u> 주식회사 (104-86-39742)	도서공연등	0	0	0	0		
		0	0	0	0	7,100	
		7,100	0	0	0	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수헌	950809-*****	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673,476	0	0	0	673,476
3월분	48,340	0	0	0	48,340
4~7월분	250,260	0	0	0	250,260
그외 (1~2월,8~12월분)	374,876	0	0	0	374,876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48,340	48,340	48,340	48,340	
		65,240	67,340	69,340	48,340	673,476
		48,436	43,520	48,900	89,0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 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